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28호 2022. 6. 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7호 사방지 지정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35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640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7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지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삼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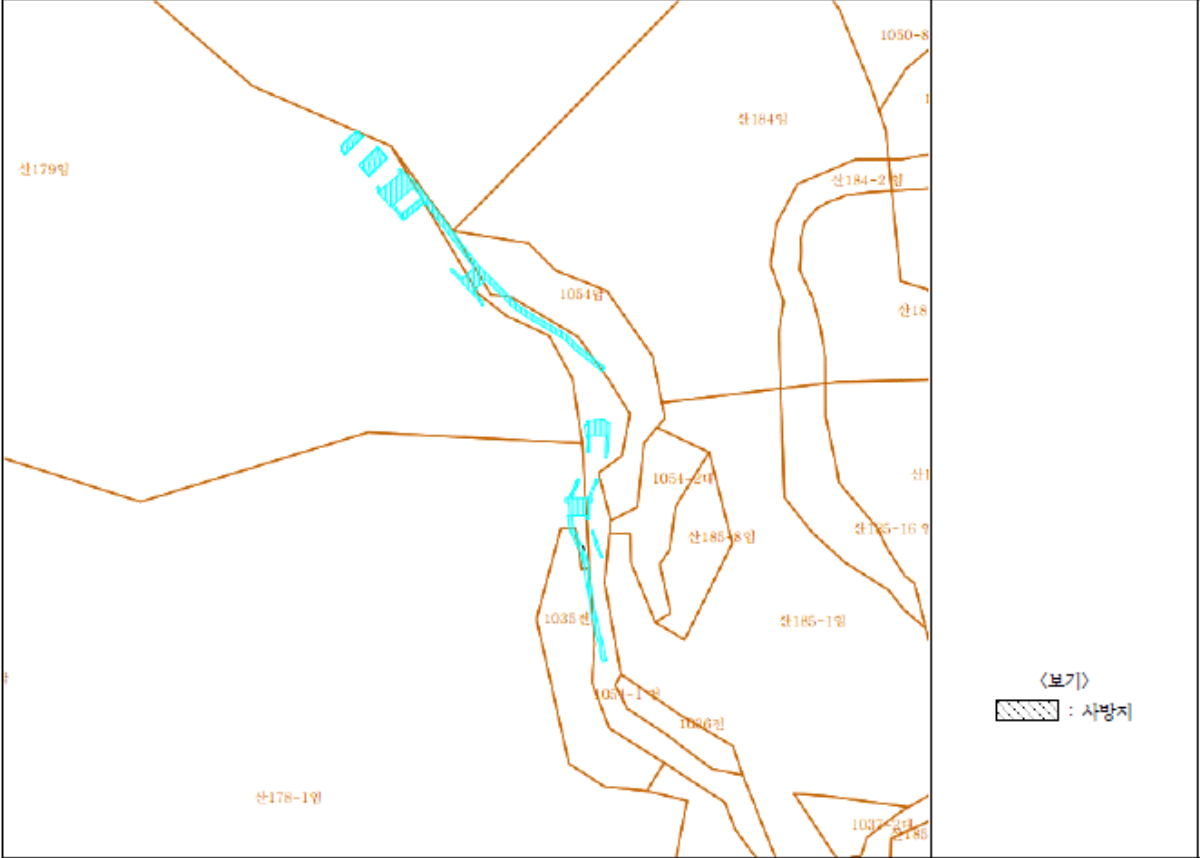
1. 지정내역: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54-1 외 7필 / 1,695m²
2. 지정사유: 202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3. 지정기간: 사방지 지정일로부터 해제일까지
4. 행위제한: 입목의 벌채, 토석 및 나무·풀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 단,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
5. 참고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산림과(☎033-570-3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 제2022-77호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삼척시 원덕읍 일원리	1035	전	1,491	25	제2022-77호 (2022.06.03.)
삼척시 원덕읍 일원리	1054	답	1,788	39	
삼척시 원덕읍 일원리	1054-1	하천	3,305	244	
삼척시 원덕읍 일원리	산178-1	임야	101,563	63	
삼척시 원덕읍 일원리	산179	임야	43,934	187	
	이	하	㎡	백	

297mm×420mm [백상지 80g/m²]

사방지 지정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m ²)	지정(m ²)	주소	성명	
계					8필		243,145	1,695			
	강원	삼척	원덕	임원	1035	전	1,491	25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284-**	권*철	
	강원	삼척	원덕	임원	1054	답	1,788	39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	김*희	
	강원	삼척	원덕	임원	1054-1	하천	3,305	244	-	국(건*부)	
	강원	삼척	원덕	임원	산178-1	임야	101,563	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1**동 1**호	오*영	
	강원	삼척	원덕	임원	산179	임야	43,934	1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55, *동 3**호	김*심	2022년 계류보전사업
	강원	삼척	원덕	임원	산179	임야	43,934	1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1**동 1**호	이*준	
	강원	삼척	도계	황조	산43	임야	20,557	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5**호	주식회사에 *****	
	강원	삼척	도계	황조	산152	임야	37,879	544			
	강원	삼척	원덕	노경	산24	임야	32,628	38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1길 33, 1**동 7**호	심*선	

제2022-77호

삼척시 공고 제2022-635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도로 하장302호(번천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삼척시장

1. 사업의 개요

○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하장면	농도	거루소 선	하장 302 호	하장면 번천리 산57-8	하장면 번천리 216-13	0.86	번천리	6.5	6.5	차로 폭 확장 도로공사

- 사업 량 : L=860m, B=6.5m
- 사업기간(예정) : 고시일 ~ 2022. 12.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삼척시청 / 삼척시 중앙로 296

2.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명	열람 장소	열람 시간	열람 기간
농어촌도로 하장302호 (번천리) 도로확포장공사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033-570-3489)	09:00 ~ 18:00	2022. 5. 31. ~ 2021. 6. 20. (20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5. 31. ~ 2022. 6. 20.(20일간)
-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로 제출

※ 토지세목조서의 편입면적은 도면에서 구적된 면적으로 추후 지적공사 분할측량 후 면적 증감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1	하장면 번천리	216	하천	279,376	2,160		국(건설부)
2	"	216-12	하천	3,780	601		국(기획재정부)
3	"	216-13	하천	3,187	1,527		국(건설부)
4	"	7-8	전	7,130	69	삼척시 동해대로 4122-20, 가동 ***호(강부3차 A)	한*식
5	"	7-13	도로	11	11		삼척시
6	"	7-1	대지	509	22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1	한*수
7	"	7-10	도로	39	39		삼척시
8	"	7-14	도로	40	40		삼척시
9	"	216-11	하천	594	502		국(건설부)
10	"	7-7	전	5,023	291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1	"	8-1	도로	453	127		국(건설부)
12	"	7-12	도로	83	77		삼척시
13	"	7-2	전	755	253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4	"	7-11	도로	237	227		삼척시
15	"	산20	임야	19,059	15	동해시 지흥동 3**	김*영
16	"	7-16	도로	1,177	211		국(기획재정부)
17	"	산20-1	도로	776	586		삼척시
18	"	49-1	도로	432	297		삼척시
19	"	55-5	도로	761	366		국(기획재정부)
20	"	55-4	임야	903	581		국(기획재정부)
21	"	54-1	전	100	10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6**	이*권
22	"	54-2	도로	279	128		삼척시
23	"	215	도로	460	60		국(건설부)
24	"	산57-8	도로	2089	136		국(국토해양부)
소 계		24필지		327,253	8,426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농어촌도로 하장302호(번천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장 위치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8 - 번천리 216-13		
의견제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의견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청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2-640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신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통·반장 통신요금 지원 규정 신설
 -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 : 월 2만원
 - 반장 통신요금 지원 : 연 5만원 (설·추석 명절)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자치행정부서)
- 전화 : 033-570-3436
- FAX : 033-570-313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통·반장 통신요금지원 {이·통장 월 2만원, 반장 연 5만원(설·추석 명절)}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